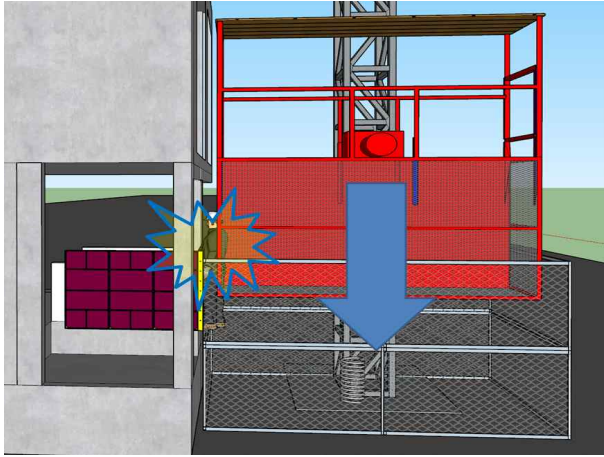


건설용 리프트와 벽체사이에 끼임재해 (사망1명)

재 해 개 요



2017. 02. 09(목) 09시 55분 경 경남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○○소속 근로자가 필로티층 난간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난간상부 면정리 작업 중 내려오는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(케이지)와 난간벽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.

재해발생원인

○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미실시

- － 리프트의 운반구가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 금지 미실시

재해예방대책

○ 위험한 작업,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

- － 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구간과 같이 근로자의 출입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
- － 작업자가 임의로 해체할 수 없도록 견고한 방책을 설치하고, 부득이하게 방책을 해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

○ 리프트 사용자 특별안전교육 실시

- －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, 리프트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, 기계·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, 비상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